

『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』

우수 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

『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』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04월 22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** : 동 사업을 통한 초기 창업가의 지속경영 제고 및 경쟁력 강화

□ **지원대상**

- 2022~2024년 『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』 창업초기 사업화지원 및 기술기반·기술이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※ 광주IP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함
- 공고일 기준 동 사업으로 수혜 받은 사업자를 유지하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함 ※ 법인 전환(대표자 유지)으로 사업자 변경된 경우 지원가능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① 과년도 『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』 후속지원 既수혜기업
- ② 동 사업 프로그램 ‘IR 기초교육’ 불참자 (대표자 불참시 평가 자동제외)
- ③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및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선정기업
- ☞ 동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확인 예정

□ **지원규모 및 기간**

- **(지원규모)** 6개사 내외
- **(지원금액)**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※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
- **(지원기간)** 협약 체결일로부터 ~ 10. 31(금), 약 5개월 내외
- ※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□ **지원내용 및 방법**

- **(지원내용)**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(연계된)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, 사업화,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(업) 외주용역(가공)비 지원 ※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불가

구 분	지 원 내 용
시제품제작	· 제품 상용화 단계 필요 시제품 개발(설계, 시험, 제작) 지원
제품고급화	· 기존 제품 보완 및 추가 고도화(기능 및 공정개선 등) 지원
마케팅	· 디자인 개발(개선),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, 판로개척 지원 등
특허 및 인증	· 지식재산권 (국내외 특허출원·등록 등) 출원·등록비 · 인증(시험분석, 신뢰성/성능인증, 표준화 등) 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
자유제안	· 상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- **(지원방법)**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 용역(가공) 기업(관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
 ※ 단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 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
 -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협의결과에 따름

□ **세부 추진일정(안)**



※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□ 사업 추진절차

단 계	세 부 내 용
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	· 우수 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시행 공고 · 수혜기업 → 방문 및 이메일 접수
↓	
적격성 검토	· 여건(사업 수혜여부, 사업 영위여부, 중복성 등) 검토
↓	
IR 기초교육(5.9.금)	· IR 피칭 관련 교육(대표자 참석 必 불참시 평가 자동 제외)
↓	
IR 발표평가(1차)	· 평가위원회 개최(대면평가 및 1차 평가기준 적용)
↓	
사업 선정평가(2차)	· 평가위원회 개최(대면평가 및 2차 평가기준 적용) · IR 발표평가 통과기업 恨(최종선정 2배수 내외)
↓	
협약 체결	·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(광주TP↔선정기업↔공급기업)
↓	
사업수행	·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개별 사업수행 · 기업별 중간모니터링 진행(광주TP↔선정기업)
↓	
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	· 수행결과 최종보고 및 우수성과 공유 발표 → 사업비 지급

2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 : 적격성 검토 → IR발표평가(1차) → 선정평가(2차)

□ 선정기준

-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(최고, 최저 제외) 평균 70점 이상 기업
 - ※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(不)
- 단, 동일 접수일 경우 '투자유치 가능성(1차)', '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(2차)' 높은 과제 우선 선정

□ 평가배점(1차)

항 목	평 가 지 표	배 점
역량 및 현황(20점)	-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동기의 명확성	10
	- 핵심 인력 구성의 우수성	5
	- 기술 지식 수준	5
사업성(25점)	- 사업 성장 가능성(매출, 고용, 자본금 등)	10
	-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(기술 및 모방가능성 등)	10
	-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	5
성장성(25점)	- 목표 시장의 규모 및 구체성	10
	-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	10
	- 수익 실현 가능성	5
투자유치 가능성(40점)	- 단계별 투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15
	-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	15
	- Exit 전략의 구체성 및 회수가능성	10
합계		100

□ 평가배점(2차)

항 목	평 가 지 표	배 점
지원 필요성(20점)	- 지원 후 사업(기술개발 및 사업화) 진척도	10
	- 후속지원 필요성 및 CEO역량 등	10
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(50점)	- 既지원 기술 및 제품과의 연계성	10
	- 사업 성장 가능성(매출, 고용, 자본금 등)	10
	-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(기술 및 모방가능성 등)	10
	- 기술개발 계획 및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등	20
	-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수익 실현 가능성	10
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(15점)	-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	10
	-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	5
우대가점(5점)	- Co2 저감기술(제품), 재생에너지 기술(제품)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	1
	-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	1
	- 기업 자부담율 20% 이상 적용 시	3
합계		100

3

신청방법

□ 신청양식 : (재)광주테크노파크(www.gjtp.or.kr)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(www.iplexgj.com)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

□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(IR발표자료, 기본신청서) 및 하기 서류 각 1부

구 분	제 출 서 류	비 고
필 수	· 지원 신청서(IR 발표자료, 기본 신청서) 각 1부	※ 첨부파일 참조
	· 개인정보수집동의서	※ 기본신청서 내 포함
	· 청렴이행서약서	※ 기본신청서 내 포함
	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	·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	※ 법인사업자에 한함
	· 국세 납부증명서,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	
	· 재무제표(2022년, 2023년) 각 1부 ·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2022~2024년) 각 1부	
	· 고용보험가입자목록(2022~2024년) 각 1부 * 각 연도 12월말 기준	
기 타	· 증빙자료 - 지식재산권, 특허출원, 창업교육 수료증 등 -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력 및 수상 내역 등	※ 해당자에 한함
	·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각 1부	※ 2차 평가 대상자 恨 추후 별도 제출

※ 필수 첨부 서류의 경우 최근 1달 이내 서류에 한함

□ 접수 및 문의처

- (방 법) 방문 접수 또는 e-mail 접수
- (접수처) [61436]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『I-PLEX 광주』 2층 운영본부 (202호)
- (접수메일) uj4047@gjtp.or.kr(박유정 전임)

○ (접수기한) 공고일로부터 ~ 4. 29(화), 17:00

○ (문의처)

기관명	담당자	문의처	이메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 (I-PLEX창업센터)	박장곤 선임	062-239-9613	jjanggon@gjtp.or.kr
	박유정 전임	062-239-9615	uj4047@gjtp.or.kr

4

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)
-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
-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을 산출 :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
-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기업 자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- ※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
-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
-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·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
-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-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(※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
-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'실패'(또는 이에 준하는 '미흡'시) 판정 기업
-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

-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'실패'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(예비)창업가 대상 환수조치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83호(2019. 11. 12.) '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' 적용 : <별표 2>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
- 동 사업으로 창업하였으나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
- 과년도 『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』 후속지원 既수혜기업
-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선정기업
-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(예비)창업기업 선정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- 붙임 1. 지원신청서 양식(기본신청서)
 2. 지원신청서 양식(IR발표자료)

3.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
4. 청렴이행서약서(신청기업, 공급기업) 각 1부